

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, 인·허가 과정,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**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하여 청약자격,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**하시기 바랍니다. 청약시 청약자격의 미숙지, 착오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내

|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|

| | | |
|----------|---|--|
| 1 | 신청유형 확인 필수! 소득130%이하 - 우선공급 50% 소득160%이하 - 일반공급 20% 소득160%초과 - 추첨제 30% (부동산가액 3.31억 이하 충족) | • '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'을 기준으로 세대당 소득이 각 공급대상별 소득요건 이내이어야 합니다. • '21.11.16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청약자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추첨제(30% 물량)가 신설되었습니다. (단, 부동산가액(토지 : 공시지가, 건축물 : 시가표준액, 전세보증금 제외) 약 3.31억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) |
| 2 | 소득세 납부조건 충족 | 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•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이거나 1년내 소득세를 납부한 분 |
| 3 | 과거 주택 소유 無 | •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|
| 4 |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| 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 충족(포항시 거주자, 전용 84㎡ 200만원이상 충족) |

|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확인 |

| 공급유형 | 구분 | 혼인 중 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|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자 (1인 가구)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단독세대가 아닌자 (등본상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자) | 단독세대 (등본상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) |
| 소득 기준 구분 | 우선공급(기준소득, 50%) | 130% 이하 | ○ | × |
| | 일반공급(상위소득, 20%) | 130% 초과~160% 이하 | ○ | × |
| 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 (추첨제, 30%) | 160%초과, 부동산가액(3.31억원)충족 | ○ | ○ | × |
| | | | | (전용 60㎡이하의 경우 가능) |

| 공급유형별 청약 자격조건 |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|---|
| 신청 자격 | • 생애 최초(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)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-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(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)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(입양을 포함,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있는 자녀를 말함)가 있는 분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•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-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분은 소득우선공급(70%) 자격으로 신청가능 -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(토지 및 건물)의 합계액이 3억3,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(30%) 자격으로 신청가능 |
| 당첨자 선정 방법 | • 우선배정 -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-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- 배정물량 30퍼센트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②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•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: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(포항시) 거주자 ② 추첨 |

|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|

| 공급유형 | 구분 |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| |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3인 이하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8인 | |
| 소득 기준 구분 | 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 | 130% 이하 | ~8,071,614원 | ~9,361,052원 | ~9,523,894원 | ~10,113,773원 | ~10,703,651원 | ~11,293,530원 |
| | 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 | 130% 초과~160% 이하 | 8,071,615원 ~9,934,294원 | 9,361,053원 ~11,521,294원 | 9,523,895원 ~11,721,715원 | 10,113,774원 ~12,447,720원 | 10,703,652원 ~13,173,725원 | 11,293,531원 ~13,899,730원 |
| 추첨제 (30%) | 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 | 160% 초과 부동산가액(3.31억원이하)충족 | 9,934,295원~ | 11,521,295원~ | 11,721,716원~ | 12,447,721원~ | 13,173,726원~ | 13,899,731원~ |
| | 1인 가구 | 160% 이하 | ~9,934,294원 | ~11,521,294원 | ~11,721,715원 | ~12,447,720원 | ~13,173,725원 | ~13,899,730원 |
| | | 160% 초과 부동산가액(3.31억원이하)충족 | 9,934,295원~ | 11,521,295원~ | 11,721,716원~ | 12,447,721원~ | 13,173,726원~ | 13,899,731원~ |

‘삼구트리니엔 시그니처’는 전 세대 전용 60㎡ 초과 주택형으로 공급되어 단독세대(1인 가구)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.

※ 상기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으로, 상기 내용이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.

※ 본 홈페이지는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청약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